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01.01] (일부개정) 2021.10.28 조례 제2564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복지기획팀 관리책임전화번호 : 061-470-2183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, 12, 29,, 2018, 3, 29.>

제2조(유공자의 정의)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참전유공자(이하 "유공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11. 29.>

- 1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)된 군인
- 2.「병역법」또는「군인사법」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
- 3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- 4. 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학도병,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
- 5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

제3조(지원대상)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 지급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 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한다. 다만, 국가보훈처장이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. <개정 2012. 11. 29., 2018. 3. 29., 2020. 12. 10.>

- 1. 삭제 <2012. 11. 29.>
- 2. 삭제 <2012. 11. 29.>
- 3. 삭제 <2012. 11. 29.>

제4조(지원내용) 영암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1. 29., 2018. 3. 29., 2020. 12. 10., 2021. 10. 28.>

- 1.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
- 2.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- 3. 기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
- 4. 참전유공자 명절위문금(설, 추석): 각 10만원

제5조(수당지급 시기) ① 수당은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, 수당 지급일이 토·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②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, 지급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.

제6조(수당의 신청)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(이하 "수급권자"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·면장에게 제출한다.

-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 수급대상 자의 범위는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.
- ③ 본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, 부양의무자, 읍면 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.
- ④ 수당 신청서를 접수하거나,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·면장은 매월 10일까지(사망위로금은 접수 후 3일 이내) 군수에게 지급 대상자명부나 그 변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당지급결정)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건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보한다.

② 군수는 수당지급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 의뢰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1. 29.>

제8조(수당 지급중지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- 1.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
- 2.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타인이 받게 한 경우
-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의 10일을 기준으로 하고, 11일 이후 중지사유 발생시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.
-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.

제9조(수급권자의 관리)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부칙 <2012, 11, 29, 조207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2013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8. 7. 조212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1. 9. 조2327>

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3. 29. 조2348>

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12. 10. 조2511>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0. 28. 조2564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